##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4852

발의연월일: 2022. 3. 3.

발 의 자:이병훈·김영배·김철민

박 정・신동근・어기구

오영훈 • 유정주 • 이상헌

이용우 · 전재수 · 홍성국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음.

지난 2020년 12월 「공연법」 개정을 통하여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가 규정되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2항제1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중 "방지 노력"을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u>방지 노력</u> ) (생 략)	<u>금지 등</u> )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
	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lt;신 설&gt;</u>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u>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u>
<u>1.</u> (생 략)	<u>2.</u> (현행 제1호와 같음)
<u>1의2.</u> (생 략)	<u>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u>2.</u> ~ <u>4.</u> (생 략)	$4. \sim 6.$ (현행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